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25호
2024. 4. 30.(화)

차 례

공 고(5)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공고 제2024-495호) 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공고 제2024-502호) 5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열람공고(공고 제2024-505호) 8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공고 제2024-509호) 12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공고 제2024-513호) 13

그 밖의 사항(1)

-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45호) 42

공 략									
-----	--	--	--	--	--	--	--	--	--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 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I.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1. 공시기준일: 2024년 1월 1일
2. 대 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옛신탄진로 235(오정동 9-20번지) 외 10,381호
3.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4. 열람장소: 대덕구청 세정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2024. 4. 30. ~ 5. 29.
2. 신청인: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대덕구청 세정과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제출
4. 결과통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대덕구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675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4. 1. 1.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2인이 표준주택을 감정 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청 세정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 · 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서 명)

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공시일: 2024년 4월 30일
- 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관내 39,764필지
- 열람방법: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신청기간: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 제출방법: 제출처에 마련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2024년 5월 30일 ~ 6월 26일
- 처리방법: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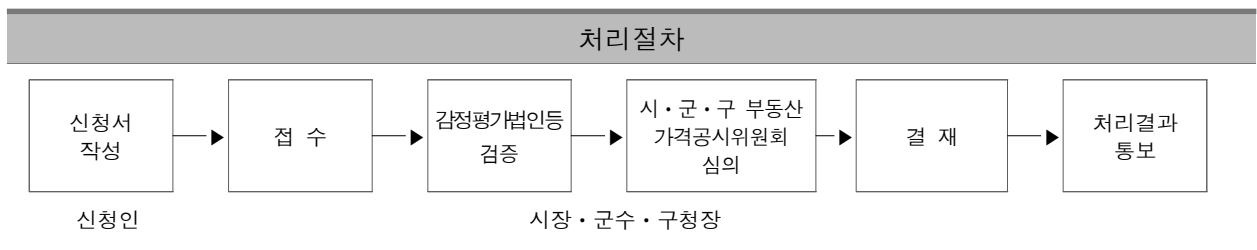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Address & Lot No.	
Individual	Land Category	
Lot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Appellant's Opinion
	KRW/m ²	KRW/m ²
Reasons to App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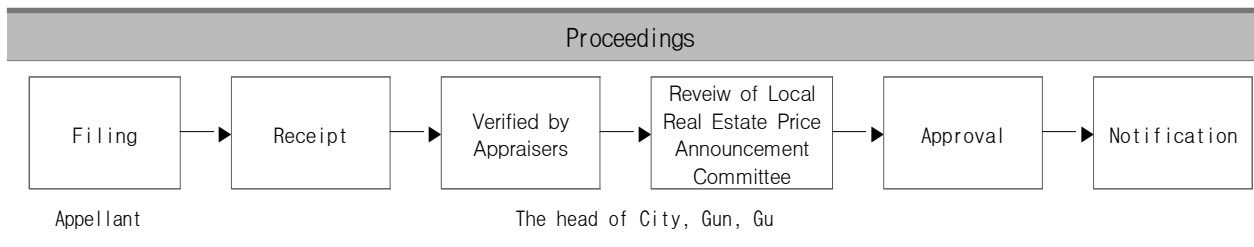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210mm×297mm(Woodfree Paper 80g/m²)

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열람공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와동, 상서동, 신탄진동 일원의 도로를 정비(변경 및 신설)하고자,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건설과, ☎042-608-52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년 4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신탄A	10	국지도로	264	대로 3-85	신탄진동 226-5	일반도로			상서평촌 재정비축진지구
신설	소로	1	상서A	10	국지도로	339	대로 3-48	소로 1-상서12	일반도로			상서평촌 재정비축진지구
신설	소로	3	와동A	4~6	국지도로	368	대로 1-2	대로 1-2	일반도로			와동 자연취락지구
신설	소로	3	와동B	4~5	국지도로	62	대로 1-2	와동 162-2	일반도로			와동 자연취락지구

(2)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신탄A	• 도로신설 - L = 264m, B = 10m	• 지역통행 개선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황도로를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 1-상서A	• 도로신설 - L = 339m, B = 10m	• 지역통행 개선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황도로를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 3-와동A	• 도로신설 - L = 368m, B = 4~6m	• 지역통행 개선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황도로를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 3-와동B	• 도로신설 - L = 62m, B = 4~5m	• 지역통행 개선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황도로를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대덕구1. 비래골	대덕구 비래동 430번지 일원	31,125.1	-	31,125.1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31,125.1	-	31,125.1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1,125.1	-	31,125.1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대덕구1. 비래골	자연취락지구	대덕구 비래동 430번지 일원	4층 이하	31,125.1	06.07.2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안)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	767	4,600	-	-	-	-	-	-	3	767	4,600
	변경	3	785	3,713	-	-	-	-	-	-	3	785	3,713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소로	기정	3	767	4,600	-	-	-	-	-	-	3	767	4,600
	변경	3	785	3,713	-	-	-	-	-	-	3	785	3,713

■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비래1	6	국지도로	192	대로 3-30	비래동 483	일반도로		06.7.20		
기정	소로	3	비래2	6	국지도로	137	소로 3-비래1	비래동 425-2	일반도로		06.7.20		
변경	소로	3	비래2	4	국지도로	135	소로 3-비래1	비래동 425-2	일반도로		06.7.20		
기정	소로	3	비래3	6	국지도로	438	대로 3-30	비래동 404	일반도로		06.7.20		
변경	소로	3	비래3	4~6	국지도로	458	소로 3-비래1	비래동 404	일반도로		06.7.20		

■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비래2	소로 3-비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연장 및 폭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 137m → 135m 감)2m - B = 6m → 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일부구간 현황도로 및 지장물 등을 고려한 선형조정을 위해 연장 및 폭원 변경
소로 3-비래3	소로 3-비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연장 및 폭원, 기점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 438m → 458m 증)20m - B = 6m → 4~6m - 기점 : 대로3-30 → 소로3-비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및 지장물 등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폭원을 변경하고, 도로의 연계성을 위해 연장 및 기점변경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4.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대전광역시 건설과 (042-608-5212)

6. 관계도면 : 게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509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제 목: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상호명) 공고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30.(30일간)
- 공고대상자 및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변경등록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덕구 제2013-2호	(주)북대전현대 상용서비스 (정진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24 (읍내동)	상호명	(주)북대전현대 서비스	(주)북대전현대 상용서비스

※ 최초등록일: 2013. 8. 1.

-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환경과(☎042-608-6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구 문평동 42-1번지 일원의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평동 42-1번지 롯데칠성 대전공장 증축공사)
2. 공고기간: 2024. 4. 30.(화) ~ 2024. 5. 7.(화)
3. 사업내역

사업명 : 문평동 42-1번지 롯데칠성 대전공장 증축공사	
<p>가. 사업주체 : 롯데칠성음료(주)</p> <p>나. 설계자 :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p> <p>다. 시공사 : 롯데테크(주) 대표이사 이관호</p> <p>라.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2-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66,200㎡ ○ 연면적 : 63,245.56㎡ / 증축면적 : 18,256.93㎡ ○ 규모 : 지하 1층/지상 4층 ○ 용도 : 공장 ○ 공사기간 : 2024. 5. ~ 2025. 12. (36개월) ○ 허가일 : 2023. 8. 8. <p>마. 안전점검 대가 산정용 공사비 : 32,591,000,000원 (VAT별도)</p> <p>※ 건축물의 초기·정기안전점검 비용.</p> <p>※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 제7항에 따라</p> <p>공사비 효율에 따라 산정하였음.</p>	<p>바. 입찰가격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 : 31,906,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백단위 절상) ○ 복수예비가격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p>※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금 액	산출근거
제1종 시설물 (건축 공사)	1종시설물 건축물 정기점검	1차	6,716,680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 47조 및 [별표8]기준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2차	6,716,680	
		3차	6,716,680	
	건축물 초기점검	초기점검	8,743,190	
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1차	2,000,000	
		2차	2,000,000	
계			32,893,230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와 횟수: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4. 5. 8.(수) 09:00 ~ 2024. 5. 10.(금) 14: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예정가격은 “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에

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2024. 5. 10.(금) 15:00 이후

나.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입찰집행관 PC)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4. 5. 13.(월) 09:00 ~ 2024. 5. 14.(화) 14:00(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대덕구청 건축과(본관 1층) / 건축허가팀 042-608-5152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4. 5. 16.(목) 09:00 ~ 2024. 5. 17.(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대덕구청 건축과(1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열람서류 사진촬영 불가)]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민원처리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함.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대덕구청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95점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개찰 후 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 1)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공고(대덕구 공고 제 2021-891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4)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응모서류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대덕구 공고 제2023-1047호)」 [별첨2] 참고하여 제출.

※ [별첨1]의 서약서 인감 날인하여 첨부할 것.

11.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덕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선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카.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총 괄(배점기준)

구 분	1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50점	40점	등록명부 기준으로 별도 지정
입찰가격	50점	60점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5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50\text{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 - 2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나. 점검비용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건축공사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 - 4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부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PQ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52)	(1) 사업책임기술자	(17)	- 사업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만 인정)의 특급기술자,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중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td> <td>특급</td> </tr> <tr> <td>6</td> <td>5</td> </tr> </table>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6	5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6	5												
	(나) 경력	6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년 이상</td> <td>17년 이상</td> <td>14년 이상</td> <td>10년 이상</td> </tr> <tr> <td>6</td> <td>5</td> <td>4</td> <td>3</td> </tr> </table>	20년 이상	17년 이상	14년 이상	10년 이상	6	5	4	3			
	20년 이상	17년 이상	14년 이상	10년 이상										
	6	5	4	3										
	(다) 실적	5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5년 이상</td> <td>4년 이상</td> <td>3년 이상</td> <td>2년 이상</td> <td>2년 미만</td> </tr> <tr> <td>5.0</td> <td>4.3</td> <td>3.5</td> <td>2.8</td> <td>2.0</td> </tr> </table> * 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가 안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 포함 등)은 명부삭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5.0	4.3	3.5	2.8	2.0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5.0	4.3	3.5	2.8	2.0									
(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	- 분야별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만 인정)의 건설기술자,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td> <td>특급</td> <td>고급</td> </tr> <tr> <td>6</td> <td>5</td> <td>4</td> </tr> </table>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고급	6	5	4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고급												
6	5	4												
(나) 경력	6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5년 이상</td> <td>12년 이상</td> <td>9년 이상</td> <td>6년 이상</td> </tr> <tr> <td>6</td> <td>5</td> <td>4</td> <td>3</td> </tr> </table>	15년 이상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6	5	4	3				
15년 이상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6	5	4	3											
(3) 분야별 참여기술자	(10)	- 분야별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td> <td>특급</td> <td>고급</td> <td>중급</td> <td>초급</td> </tr> <tr> <td>5</td> <td>4.5</td> <td>4</td> <td>3.5</td> <td>3</td> </tr> </table>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5	4	3.5	3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5	4	3.5	3										
(나) 경력	5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8년 이상</td> <td>6년 이상</td> <td>4년 이상</td> <td>2년 이상</td> <td>2년미만</td> </tr> <tr>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able>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미만	5	4	3	2	1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미만										
5	4	3	2	1										
(4) 참여기술자 인원보유 현황	(13)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인원보유 현황 - 산출기준 : 기술자수(기술사, 건축사×1)+(특급×0.8)+(고급×0.6)+(중급×0.4)+(초급×0.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8이상</td> <td>7이상</td> <td>6이상</td> <td>5이상</td> <td>4이상</td> <td>3.4이상</td> </tr> <tr> <td>13</td> <td>12</td> <td>11</td> <td>10</td> <td>9</td> <td>8</td> </tr> </table>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를 제외한 기술자는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평가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3.4이상	13	12	11	10	9	8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3.4이상									
13	12	11	10	9	8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30)	(1)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평가 · 산정방법 : 용역(각 현장별 1회만 인정) 건수, 금액 × 1.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2건 이상</td> <td>8건 이상</td> <td>4건 이상</td> <td>1건 이상</td> <td>무실적</td> </tr> <tr> <td>15</td> <td>14.2</td> <td>13.4</td> <td>12.6</td> <td>11.8</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5억원 이상</td> <td>3.5억원 이상</td> <td>2억원 이상</td> <td>1억원 이상</td> <td>1억원 미만</td> </tr> <tr> <td>15</td> <td>14.2</td> <td>13.4</td> <td>12.6</td> <td>11.8</td> </tr> </table>	12건 이상	8건 이상	4건 이상	1건 이상	무실적	15	14.2	13.4	12.6	11.8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5	14.2	13.4	12.6	11.8																								
			12건 이상	8건 이상	4건 이상	1건 이상	무실적																																								
15	14.2	13.4	12.6	11.8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5	14.2	13.4	12.6	11.8																																											
			* 용역 수행실적은 완료일 기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기준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재제처분 및 벌점 확인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점수</th> <th>회사채 신용평가등급</th> <th>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th> <th>기업 신용평가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3.0</td> <td>AAA</td> <td>-</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A+, AA0, AA-</td> <td>A1</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0</td> <td>A2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2.9</td>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B0</td> <td>A3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2">2.8</td> <td>BB+, BB0</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td> <td>B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2.7</td> <td>B+, B0, B-</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2.6</td> <td>CCC+이하</td> <td>C이하</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 </tr> </tbody> </table>	점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	CCC+이하	C이하
점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	CCC+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라. 투자 및 기술개발 실적 (8)	(1) 투자실적	(6)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3%이상</td> <td>2%이상</td> <td>1%이상</td> <td>0.5%이상</td> <td>0.5%미만</td> </tr> <tr> <td>6.0</td> <td>5.5</td> <td>5.0</td> <td>4.5</td> <td>4.0</td> </tr> </table>	3%이상	2%이상	1%이상	0.5%이상	0.5%미만	6.0	5.5	5.0	4.5	4.0																																		
	3%이상	2%이상	1%이상	0.5%이상	0.5%미만																																										
6.0	5.5	5.0	4.5	4.0																																											
(2) 기술개발실적	(2)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1.0)+(건설기술 특허건수×0.6)+(건설기술실용신안×0.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r> <tr> <td>특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가점 (2.8)	(1)참여기술자중 관계전문기술자 보유	(2.5)	<p>- 현장 정기안전점검에 참여 가능한 관계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고, 필로티가 있는 공동주택의 가설구조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현장점검 참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p> <p>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11항 및 동법 시행령 101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 - 관계전문가 :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등록된 기술사 <p>2)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 - 전문가 : 공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구조물 제외) </div> <p>*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중 1인을 대상으로 평가</p>					
	(2)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p>-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3</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d style="text-align: center;">0.1</td> </tr> </table> <p>*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p>	3%이상	2%이상	1%이상	0.3	0.2
3%이상	2%이상	1%이상						
0.3	0.2	0.1						
마. 감점 (-6)	부실별점	(-6)	<p>- PQ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별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p> <p>*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제재처분 및 별점 확인</p>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일반사항

1.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등록명부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 대상으로 정한다.
2.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PQ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 가.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한다.
 -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중 ‘인정일’로 평가하며,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참여기술자의 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중 ‘인정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명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한다.
 -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이란 동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상의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말하며,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 진단 등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정기안전점검과 무관한 기간을 임의로 산입하는 경우, 해당업체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한다.
 - 마. 참여기술자가 라.항목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바.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PQ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는 겸임이 불가하며, 참여기술자 인원 보유현

항은 반드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 산입되는 경우 모든 권역의 등록명부에서 제외한다.

2.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란 동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상의 정기안전점검용역을 말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용역 수행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용역수행 실적(건수, 금액) 산정시 정기안전점검(점검횟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의 가중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의 준공이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및 별표1 에 따른 점검횟수(발주자에 의한 조정횟수 포함)이상과 초기점검을 모두 완료하여 최종 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초기점검 대상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위 지침 제 21조 및 별표1에 따른 점검횟수(발주자에 의한 조정횟수 포함)이상을 모두 완료하여 최종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 단, 초기점검만 별도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 인정불가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의 **용역수행실적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실적산정시 발주자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급(하도급)받은 내용을 같은 업종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재(부분)하도급한 부분은 불인정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공공)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에 의한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민간)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세금계산서,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및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3. 점검·진단 평가결과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의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확인서'로 평가하며, 점검·진단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다. PQ참여업체는 별첨 [서식8-2]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자체, 한국기술사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 증명서로 평가하여, 경력증명서 갑지(별첨 및 제재사항 확인가능 부분)를 제출한다.

다. PQ참여업체는 별첨 [서식9]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내역을 작성 제출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PQ참여업체가 별첨 [서식10]에 따라 작성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투자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합계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하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를 별첨 [서식11]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라.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년도부터의 해당자료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라. 기술개발실적은 최초지정자(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마.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등록증(등록원부 포함) 및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바. 기술개발실적의 가점해당 여부를 [서식12]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8.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의 가점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신규 건설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 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나.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등 경력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9. 감점(부실벌점 및 입찰불참)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 가. 참여업체 부실벌점은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로 확인하며,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 나. 참여기술자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 다. 부실벌점 및 입찰불참 내역을 별첨 [서식13]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접수번호

2024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0000 신축공사)

2024년 월 일

(회사명)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업 체 명 : (주)○○엔지니어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세부사항		배점한도	평 점		비 고
				신청자	지정권자	
가. 참여기술자 (52)	(1)사업책임기술자	(1) 자격	6	6		
		(2) 경력	6	6		
		(3) 실적	5	2		
	(2)분야별책임기술자	(1) 자격	6	6		
		(2) 경력	6	6		
	(3)분야별참여기술자	(1) 자격	5	5		
		(2) 경력	5	5		
(4) 참여기술자 인원보유 현황		13	11			
소 계		52	47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30)	(1) 정기안전점검실적	건수	15	11.8		
		금액	15	11.8		
	소 계		30	23.6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평가결과		4	4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3		
	소 계		10	10		
라. 투자 및 기술 개발실적(8)	(1) 투자실적		6	6		
	(2) 기술개발실적		2	2		
	소 계		8	8		
마. 가점(2.8)	(1) 참여기술자중 관계전문기술자 보유		2.5	2.5		
	(2)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0.3		
	소 계		2.8	2.8		
바. 감점	부실벌점 및 입찰불참		(-6)	0		
합 계		100	91.4			

- ※ 1. 자기평가 란은 PQ참여업체에서, 지정권자 란은 지정권자가 작성(이하 동일)
 2. 비고란에는 하한점인 경우 '하한점' 을 기재(하한점인 경우 증빙제출 불필요)

상기 종합평가표는 [부표] 평가기준 등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특히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등록명부 삭제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회사명 (주)○○엔지니어링

대표자 ○ ○ ○ (인)

[서식3]

기술자 현황

일련 번호	기술 부문	전문 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 및 학력구분	자격명	종목	취득 일자	최종 학위	전공	취득 일자	근무 기간	비고
1													사책
2													분책
3													분참
4													
5													

- ※ 1. 일련번호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1부터 기재
 2. 근무기간은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시킬 것
 3. 비고란에는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기재
 : 사책(사업책임기술자), 분책(분야별책임기술자), 분참(분야별참여기술자) 기재
 4. 붙임서류
 ① 회사의 기구(조직)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연금관리공단) 각1부

202 년 월 일

회사명 (주)○○엔지니어링
 대표자 ○ ○ ○ (인)

[서식5]

분야별 책임기술자

1.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성명	교육	(1) 자격	(2) 경력		배점한도		자기평가	
			인정일	참여년수	자격	경력	자격	경력
이분책	이수	건축구조기술사	6,112	16	6	5	6	4

* 경력인정일은 경력증명서상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확인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6]

분야별 참여기술자

1.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성명	교육	(1) 자격	(2) 경력		배점한도		자기평가	
			인정일	참여년수	자격	경력	자격	경력
이분책	이수	건축구조기술사	6,112	16	6	5	6	4

* 경력인정일은 경력증명서상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확인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7]

참여기술자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등급 전문분야	기술자 인원수(명)						인원지수	평점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인원수		
건축분야	2	2	3	3	4	14명	7.4	12
계수	×1	×0.8	×0.6	×0.4	×0.2			
소계	2	1.6	1.8	1.2	0.8	7.4점		

합계점수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3.4이상
배점	13	12	11	10	9	8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8-1]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업 체 명	배점한도		자기평가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20건이상	4억원이상	정기안전 (실적)	×1.0	(실적)	×1.0
			계	건	계	원

1. 아파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고
		착수일	준공일			
	소 계			건	원	

※ 붙임 : ①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②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나'항 참고]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8-2]

점검·진단 평가결과

용역명	제재일시	배점	처분	자기평가	
				감점	평점
		4	시정		
			부실		
계		4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11]

투자실적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용역업체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 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p>※ 비교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p> <p>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p>					

[서식12]

기술개발 실적

구 분	기술명	최초 지정 또는 출원일자	경과기간	출원 인수	배점	자기평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합 계					2	

※ 붙임서류 :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및 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특허증(등록원부 포함)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13]

별 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가		비 고
			감 점	평 점	
부실 별점	① 용역업체	-6			
	② 사업책임기술자				
	② 분야별책임기술자				
	② 분야별참여기술자				
합 계		-6			

※ 붙임서류 : 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별점 확인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끝.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5,233,703호

(아파트 12,401,431호, 연립 541,052호, 다세대 2,291,22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4.4.30.~2024.5.29.).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4.3.19.~2024.4.8.)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2024.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 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은

- 2024.4.30. 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24.1.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인터넷 등록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읍·면·동)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제출된 의견은

-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및 개별회신 (2024.6.27)

공동주택가격 열람부

지역명 :

(단위 : 원)

번호	소재지	명칭	동·호	전용면적	열람가격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 · 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서 명)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취하서

이의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 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 칭			
	동 호 수			
취하 사유				
<p>위 이의신청인은 ____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취하인 (인 또는 서명)</p> <p>국토교통부장관 귀중</p>				

한국부동산원 지사별 업무관장구역

지사	소재지와 업무관장구역		Tel/Fax
서울 강남	소재지	우.067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6층 서울강남지사	Tel (02)550-9000 Fax (02)550-9025
	관장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동작구	
서울 중부	소재지	우.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다동] 동아빌딩 8층	Tel (02)735-7141 Fax (02)738-2030
	관장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서울 동부	소재지	우.0480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용답동] 금풍빌딩 6층	Tel (02)2216-6811 Fax (02)2216-5020
	관장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서울 남부	소재지	우.072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1 [영등포동6가] 극동빌딩 7층	Tel (02)2634-9231 Fax (02)2676-7550
	관장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수원	소재지	우.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인계동] 기아빌딩 7층	Tel (031)211-5471 Fax (031)211-5478
	관장구역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성남	소재지	우.1349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6 [야탑동] KEB하나은행 야탑역지점 5층	Tel (031)781-1811 Fax (031)781-1816
	관장구역	경기도 성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하남시, 양평군	
안양	소재지	우.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관양동] 대고빌딩 8층	Tel (031)436-8900 Fax (031)436-8905
	관장구역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의왕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인천	소재지	우.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8층	Tel (032)437-6771 Fax (032)437-6779
	관장구역	인천광역시 전지역	
의정부	소재지	우.1165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58 [의정부동] 우리은행 의정부지점 3층	Tel (031)876-5501 Fax (031)876-5505
	관장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	소재지	우.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장항동] 흥국생명빌딩 5층	Tel (031)925-1472 Fax (031)925-6348
	관장구역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춘천	소재지	우.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요선동] 무림빌딩 7층	Tel (033)251-2300 Fax (033)255-1959
	관장구역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지사	소재지와 업무관장구역		Tel/Fax
강릉	소재지	우.25532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87 [임당동] 기업은행 강릉지점 2층	Tel (033)642-8461 Fax (033)643-4735
	관장구역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	소재지	우.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둔산동] 사학연금 둔산회관 18층	Tel (042)254-1174 Fax (042)254-7121
	관장구역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금산군	
천안	소재지	우.3112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38 [원성동] 교보생명 2층	Tel (041)565-5311 Fax (041)561-4421
	관장구역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천안시서북구, 아산시, 당진시	
홍성	소재지	우.32256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센트럴타워 4층	Tel (041)634-5141 Fax (041)634-5145
	관장구역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청주	소재지	우.2847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34 [내덕동] KT&G 충북본부 4층	Tel (043)258-1174 Fax (043)258-2545
	관장구역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주	소재지	우.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금릉동] 충주상공회의소 4층	Tel (043)842-4401 Fax (043)845-2436
	관장구역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광주	소재지	우.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치평동] 한국부동산원 3층	Tel (062)380-7600 Fax (062)380-7606
	관장구역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목포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곡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순천	소재지	우.57967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96 [연향동] 청우빌딩 9 층	Tel (061)742-9051 Fax (061)742-9055
	관장구역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전주	소재지	우.5493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금암동] 전북은행빌딩 16층	Tel (063)251-2201 Fax (063)251-2206
	관장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군산	소재지	우.54025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5 [중앙로1가] 군산교보빌딩 8층	Tel (063)443-2141 Fax (063)443-2144
	관장구역	전라북도의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지사	소재지와 업무관장구역		Tel/Fax

제주	소재지	우.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층	Tel 064)722-6872 Fax (064)752-6330
	관장구역	제주도 전지역	
부산 동부	소재지	우.4872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초량동] 한국부동산원 11층	Tel (051)462-0401 Fax (051)465-0964
	관장구역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 서부	소재지	우.469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 [괘법동] 하이에어코리아빌딩 3층	Tel (051)315-6151 Fax (051)315-6185
	관장구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 사하구,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울산	소재지	우.44632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무거동] 남운프라자 901호	Tel (052)224-1651 Fax (052)224-1650
	관장구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창원	소재지	우.5150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상남동] 한국산업은행 창원지점 3층	Tel (055)274-0992 Fax (055)263-0993
	관장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진주	소재지	우.52725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칠암동] 교보빌딩 8층	Tel (055)758-8240 Fax (055)755-8099
	관장구역	경상남도의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 군, 하동군, 남해군	
대구	소재지	우.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신천동] 영남타워 15층	Tel (053)754-7642 Fax (053)742-6110
	관장구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안동	소재지	우.3667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당북동] ABL생명 5층	Tel (054)854-4875 Fax (054)852-8374
	관장구역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포항	소재지	우.377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죽도동] 한화생명빌딩 8층	Tel (054)274-3112 Fax (054)282-8664
	관장구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청송군, 울진군, 울릉군	

끝.